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50
----------	------

2025. 10. 17.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3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9. 3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0. 17.)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금18,724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단위: 천원)

'24년 결산 보통세			'26년 연구원 출연금 (a+b)*1.0/10,000
소계 (a+b)	현년도a	과년도b	
187,236,911	184,670,774	2,566,137	18,724

▶ 2026년 출연비율 인하(당초 1.2 → 개정 1.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예정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를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토록 규정됨.

3.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광양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2026년도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로, 2026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4,846천원 감소한 18,724천원임. 2025년에 비해 2026년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2026년 출연비율이 1.0/10,000로(당초 1.2 → 개정 1.0) 인하되었기 때문임.
- 검토 결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1. 지방세연구원 출연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됨.

2.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금18,724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단위 : 천원)

'24년 결산 보통세			'26년 연구원 출연금 ($(\text{a}+\text{b}) \times 1.0/10,000$)
소계($\text{a}+\text{b}$)	현년도 a	과년도 b	
187,236,911	184,670,774	2,566,137	18,724

▶ 2026년 출연비율 인하(당초 1.2 → 개정 1.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예정

※ 예산 과 목

정책사업 : 자주재원 확보 강화

단위사업 : 지방세입 증대

세부사업 :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

통계목(306-01) : 출연금

3. 연도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내역

○ 연도별 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연도	금액(천원)	출 연 비 율
2025	23,570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
2024	31,905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
2023	21,551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
2022	21,572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
2021	24,992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
2020	21,949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
2019	21,986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
2018	21,043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6) 1만분의 1.0

4. 주무과(세정과) 의견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출연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의 금액과 다를 경우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2026년도 18,724천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